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597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 ‘관계 기관의 협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협조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가 필요하여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협조의 범위를 한정 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삭제)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3. 15. ~ 4. 25.)
3)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①</u> <u>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u> <u>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u> <u>“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u> <u>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u> <u>여야 한다.</u> <u>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u> <u>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u> <u>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u> <u>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u> <u>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u> <u>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u> <u>면 협조하여야 한다.</u>	<u>제3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통일</u> <u>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u> <u>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u> <u>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기관</u> <u>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u> <u>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총괄과	
연 락 처	02-901-7012